



보험 관련 법령 제·개정 현황

: 금융소비자보호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보험업법

황현아 연구위원

연차

최근 국회에서는 보험 관련 법령의 제·개정이 있었음. (i) 금융소비자보호법이 2021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금소법은 6대 판매규제 확대적용,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 분쟁조정 실효성 제고, 소송 시 소비자 입증책임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ii) 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금년 하반기 시행될 예정임. 개정 자배법은 정비요금 공표제도를 폐지하고 레벨3 자율주행차 사고 시 보상 및 원인 규명 체계를 마련하였음. (iii) 외화자산 한도규제 완화, 보험안내자료 관련 제도 개선,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과태료 부과제도 개선을 담고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정무위 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였으나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였음

■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이 2021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 금소법은 현재 금융권역별로 규정된 소비자보호 체계를 통합하여 동일 기능·동일 규제 체계를 도입함
 - 전 금융상품에 대한 6대 판매규제¹⁾ 확대적용, 분쟁조정 및 소송을 통한 피해구제 실효성 제고,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며, 징벌적 과징금 등 강도 높은 제재가 도입됨
- 보험산업과 관련하여서는, 법 제정 과정에서 ① 판매보수 고지제도 도입 여부, ② 금융상품자문업과 보험 대리점 겸영 문제, ③ 보험상품에 대한 적합성원칙 적용의 합리성 여부 등이 문제되었음²⁾
 - 이번에 공포된 금소법 제정안에 판매보수 고지제도는 포함되지 않았음³⁾
 - ② 및 ③의 쟁점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정과 관련하여 향후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함

■ 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 2020년 하반기 시행될 예정임⁴⁾

- 개정 자배법은 ① 정비요금 공표제도 폐지, ② 레벨3 자율주행차 사고 관련 손해배상 원칙 및 책임배분

1)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규제
 2) 관련 내용은, 양승현(2019),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도입과 정책과제』, 보험연구원 참조
 3) 판매보수 고지제도 관련 논의에 대해서는, 양승현(2019), 「보험상품 판매보수 고지제도 관련 해외사례 검토」, 『KIRI보험법리뷰』 참조
 4) 개정 자배법은 2020. 3. 6.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3. 27. 정부에 이송되었음(4. 1. 현재 아직 미공포 상태임)

체계 정비, ③ 재할시설운영심의위원회 심의 공정성 제고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 이하에서는 ① 정비요금 공표제도 폐지와 ② 레벨3 자율주행차 관련 제도 정비를 살펴봄

- (정비요금 공표제도 폐지) 기존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오던 정비요금 공표제도가 폐지되고, 자동차 보험정비협의회를 구성함
 - 기존 자배법은 국토교통부가 보험회사와 정비업자 간 정비요금 분쟁 예방을 위하여 적절한 정비요금을 조사·연구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있었음(현행 자배법 제16조)
 - 위 제도 도입 이후 정비요금 조사 결과는 단 한차례 공표되는 데 그쳤고, 정비요금을 둘러싼 보험회사와 정비업자 간 분쟁이 지속되는 등, 동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음
 - 개정 자배법은 보험회사와 정비업자가 주체가 되어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이 협의회에서 정비요금 산정과 관련된 사항을 정하도록 함(개정 자배법 제16조의2)
- (레벨3 자율주행차 사고 보상 등) 레벨3 자율주행차 사고 시에도 운행자책임이 적용되어 자동차 보유자의 보험으로 사고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⁵⁾
 - 자율주행차 정의규정을 신설하여, 운행자책임 등 현행 자배법상 보상 원칙이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개정 자배법 제2조 제1호의2, 제9호)
 - 자율주행차의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유자의 보험으로 우선 피해자를 구제하되, 보험회사가 제작사 등 책임 있는 자에게 구상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개정 자배법 제29조의2)
 - 자율주행 정보기록장치 부착을 의무화하고,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사고원인 규명을 담당할 사고조사위원회를 신설함(개정 자배법 제39조의14 내지 17)

■ 보험업법의 경우, 기존에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의 쟁점사항 중 일부를 반영한 정무위 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였으나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였음

- 보험업법 개정안(정무위 대안)은 ① 외화자산 한도규제 완화, ② 보험상품 안내자료 관련 제도 개선, ③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설명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방식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함
- (외화자산 한도규제 완화)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자율성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외화자산에 보유 한도를 100분의 50으로 상향함
 - 현행 보험업법은 외화자산 한도규제 비율을 일반계정의 경우 총 자산의 100분의 30, 특별계정의 경우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20으로 정하고 있음(보험업법 제106조 제1항 제9호)
 - 보험업법 개정안(정무위 대안)은 일반계정 및 특별계정의 외화자산 보유 한도를 각각 100분의 50으로 상향하였음
- (이해도 평가제도 적용대상 확대) 기존에 약관에 대해서 적용되던 이해도 평가제도를 보험상품 안내자료에 대해서도 적용함

5) 레벨3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한 보상방안 및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서는, KIRI리포트 제453호(2018. 9. 10), 자율주행차 특별호 참조

- 현행 보험업법은 약관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고 공시하도록 함(보험업법 제128조의4)
- 보험업법 개정안(정무위 대안)은 이해도 평가제도 적용 대상을 ‘보험약관’에서 ‘보험약관 및 보험안내자료 중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자료’로 확대함⁶⁾
- (과태료 부과 방식 개선)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설명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대상을 ‘보험회사 임원’에서 ‘보험회사’로 변경함
 - 현행 보험업법은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설명의무 위반 시 보험회사 임원에게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보험업법 제209제 제4항 제22의2호)
 -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서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설명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을 ‘회사’로 정하고 있는 점과 균형을 맞추어, 위 의무 위반 시 ‘보험회사’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kiri

6) 보험상품 안내자료 개선에 관해서는, 백영화(2019), 「보험안내자료 개선의 필요성」, 『KIRI보험법리뷰』 참조